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576호 2021년 10월 18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330호) ····· 6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도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등 조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331호) ····· 7

○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332호) ····· 16

■ 공 고

○ 계측업 신규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17호) ····· 49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23호) ····· 50

○ 경상북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24호) ····· 52

○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26호) ····· 53

○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27호) ····· 56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38호) ····· 57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39호) ····· 58

시 군

■ 고 시

○ 서동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1-265호) ····· 60

○ 경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천북배수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1-267호) ····· 63

○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1-118호) ····· 66

○ 경산 도시관리계획(영남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1-166호) ····· 79

○ 영양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양군 고시 제2021-115호) ····· 83

■ 공 고

○ 도시계획시설[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경주시 공고 제2021-2395호) ····· 87

○ 안동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1-2291호) ····· 90

○ 청송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청송군 공고 제2021-816호) ····· 94

○ 영양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영양군 공고 제2021-784호) ····· 97

○ 청도 군계획시설사업(소로3-38, 소로3-43)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청도군 공고 제2021-1162호) ····· 100

◈◈◈

경상북도 고시 제2021 -330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8.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하천 (정자천) (자호천)	교량 가설	〈정자천교〉 L=45.0m B=22.8m 〈지동교〉 L=180.0m B=12.4m 〈일광1교〉 L=325m B=12.4m 〈일광2교〉 L=200.0m B=12.4m	포항시 죽장면 정자리, 일광리 일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 (초량동)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도로공사2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7.11.23

경상북도 고시 제2021-331호

도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등 조정 고시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선남면 소재 문화재자료 「성주 도성리 삼효각」의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본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의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를 포함한다.)

2021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고시 사항

가. 도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등 조정 현황

○ 문화재명 : 성주 도성리 삼효각(星州 道成里 三孝閣)

○ 소 재 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1113-2

○ 조정사항

- 기존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해제 99㎡

- 이건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정 149㎡

나. 도지정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조정 범위

○ 기존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해제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비고
계	1필지		99㎡	18.7㎡ (80.3㎡)	
성주 도성리 삼효각 (星州 道成里 三孝閣)	경상북도 선남면 도성리 1113-2	대	99㎡	18.7㎡ (80.3㎡)	

○ 조정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정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비고
계	1필지		149㎡	28㎡ (121㎡)	
성주 도성리 삼효각 (星州 道成里 三孝閣)	경상북도 선남면 도성리 155	전	149㎡	28㎡ (121㎡)	

다.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조정 사유

○ 성주 도성리 삼효각 이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을 해제하고, 이건지에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을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코자 함

라. 조정일자 : 도보 고시일

마. 조정도면 : [붙임1] 참조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나.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유형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문화재자료	성주 도성리 삼효각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155	
2	민속문화재	박구 효자정려비	경상북도 선남면 도성리 산83	

다. 고시사유 : 성주 도성리 삼효각 이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마.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2] 참조

3. 참고사항 : 지형도면 등(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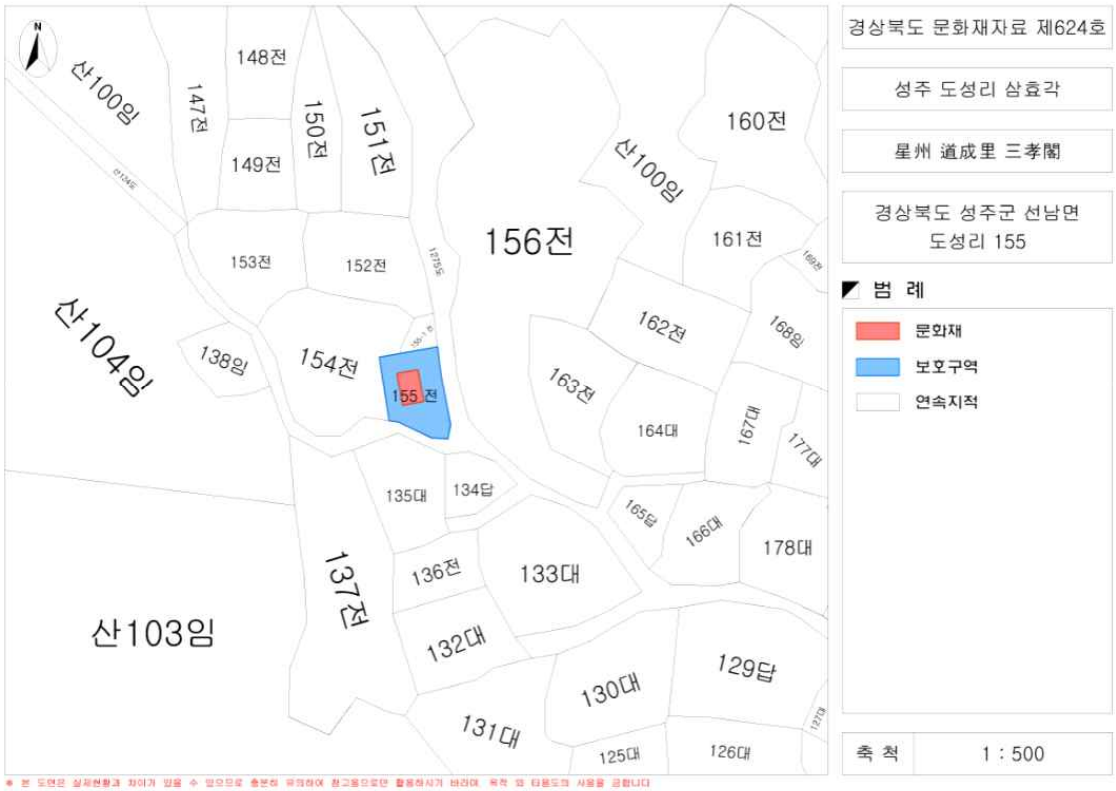
「성주 도성리 삼효각」 문화재 지정구역 등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 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4-880-3168), 성주군 문화예술과(054-930-6782)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도지정문화재 지정도면 1부.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끝.

[붙임1]

도지정문화재 지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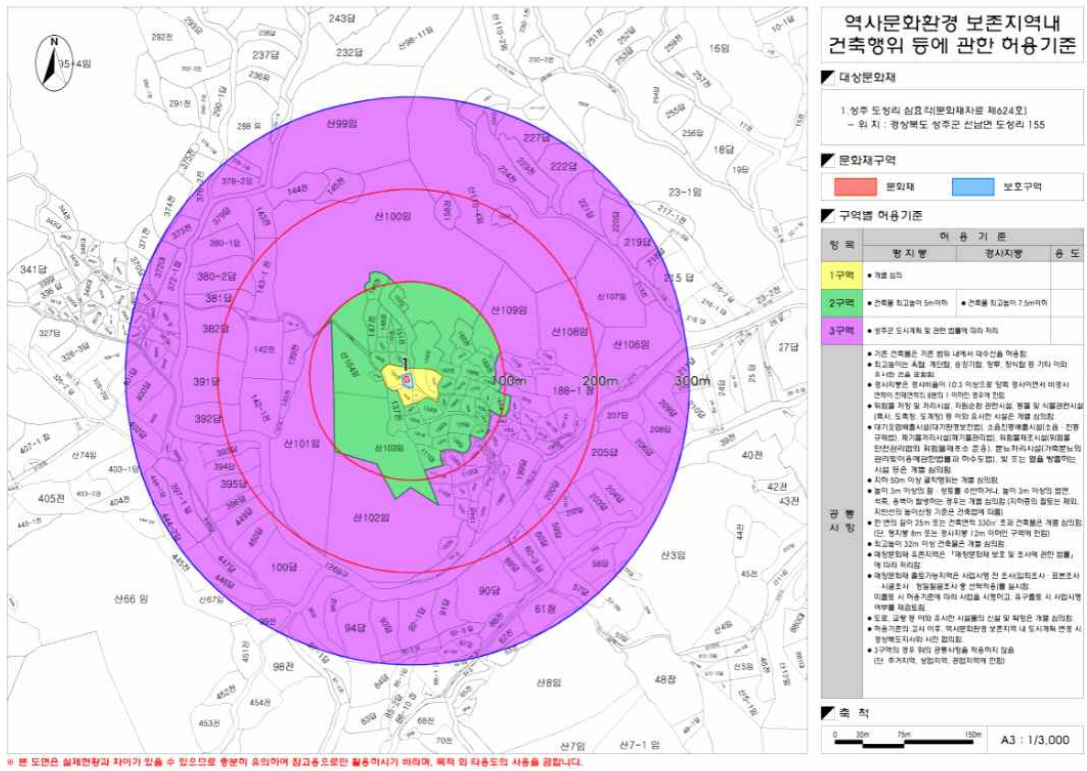
[붙임2]

역사문화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성주 도성리 삼효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항목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용도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성주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빛 또는 열을 방출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 ·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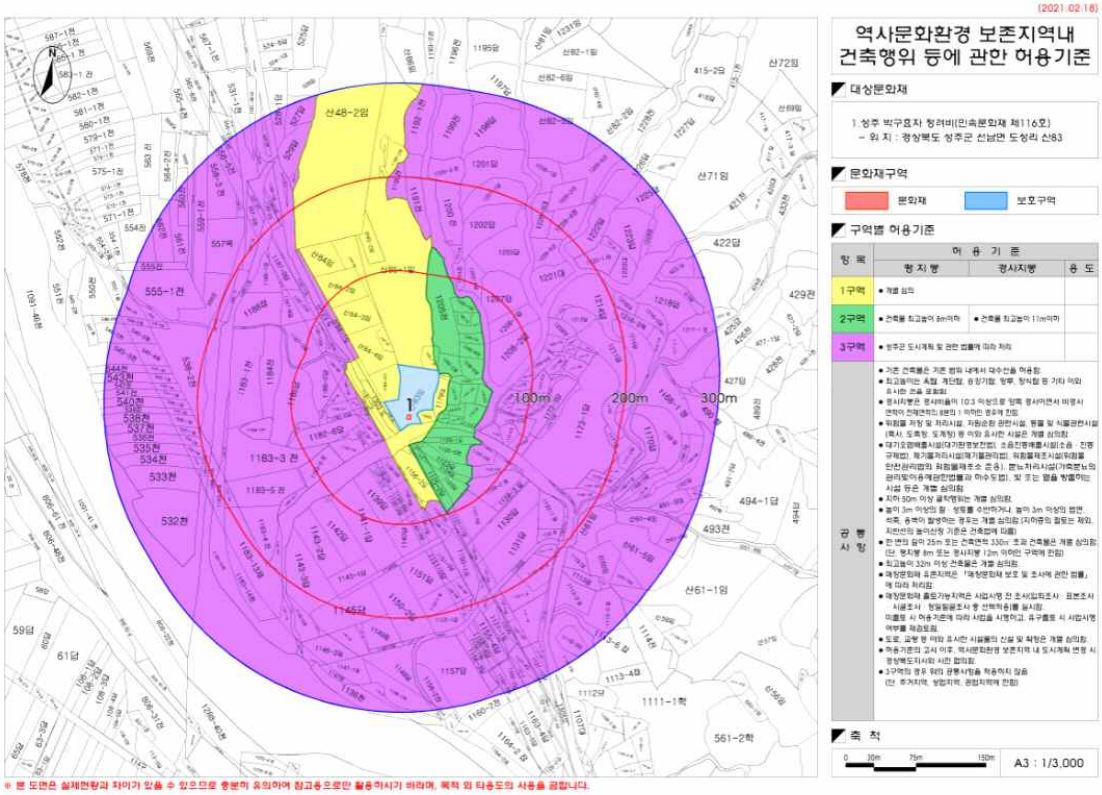
항목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용도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 표본조사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한함)		



○ “박구 효자정려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table>
<tr><th rowspan="2">항목</th><th colspan="3">허용기준</th></tr>
<tr><th>평지붕</th><th>경사지붕</th><th>용도</th></tr>
<tr><td>1구역</td><td colspan="2">● 개별 심의</td><td></td></tr>
<tr><td>2구역</td><td>●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td><td>●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td><td></td></tr>
<tr><td>3구역</td><td colspan="2">● 성주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td><td></td></tr>
<tr><td>공통
사항</td><td colspan="3">●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빛 또는 열을 방출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 ·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 표본조사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td></tr>
</table>

항목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용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한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1 -332호

경산4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다문리 일원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경산4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다. 면적 : 2,396,999㎡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

○ 기 입지해 있는 경산1·2·3 산업단지의 연계성을 고려,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의 지역내 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의 제고

○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장용지의 공급으로 산업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경산시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산업용지의 신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업용지의 적정한 공급으로 지방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성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0년 ~ 2021년

나. 개발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066,168	100.0	
정밀기기 산업		316,471	29.7	
C24	1차금속	66,000	6.2	
C25	금속가공제품	96,561	9.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3,077	1.2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9,413	1.8	
C28	전기장비	121,420	11.4	
탄소융복합 산업(클러스터)		544,761	51.1	
탄소융복합(C13,22,25,26,27,29,30,31,33)		531,765	49.9	
M70	연구개발	12,996	1.2	
제한업종		97,466	9.1	
업종제한(C11~20,23,32,33 업종제한)		97,466	9.1	
기타 산업		107,470	10.1	
C10	식료품	53,960	5.1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6,755	2.5	
C32	가구	26,755	2.5	

나.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2,396,999	100.0	
주거지역	306,750	12.8	
제1종일반주거지역	122,141	5.1	
제2종일반주거지역	184,609	7.7	
공업지역	1,671,452	69.7	
일반공업지역	1,282,158	53.5	
준공업지역	389,294	16.2	
녹지지역	418,797	17.5	
자연녹지지역	418,797	17.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396,999	100.0	
산업시설용지	1,066,168	44.5	
지원시설용지	268,943	11.2	
공공지원시설	72,236	3.0	
복합문화센터	3,960	0.2	복합문화센터 1개소 신설
물류지원시설	192,747	8.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시설용지	876,941	36.5	
도로	375,260	15.5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25,656	1.1	노외주차장 7개소
저류지	58,397	2.4	저류지 5개소
송전탑	4,506	0.2	송전탑 10개소
학교	14,000	0.6	초등학교 1개소
주유소	6,150	0.3	주유소 2개소, 충전소 1개소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31,606	1.3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1개소
119안전센터	3,300	0.1	119안전센터 1개소
가스정압기	90	0.1	가스정압기 2개소
공원	197,686	8.1	근린2, 어린이 3개소
완충녹지	149,855	6.3	완충녹지 13개소
경관녹지	9,936	0.4	경관녹지 1개소
공공공지	499	0.1	공공공지 1개소
주거시설용지	184,947	7.8	
단독주택	50,747	2.1	이주자택지
공동주택	133,700	5.6	
공동이용시설	500	0.1	마을회관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16	-	도면표시	• 산업 I
		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변경)에 따라 건축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이	-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2〉에 따라 건축
		형태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2〉에 따라 건축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2〉에 따라 건축
		건축선	• 건축한계선 (대로변 : 2m, 중로변 : 1m)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2〉에 따라 건축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지원1 ~ 공공지원2 ~ 공공지원3 ~		도면표시	• 공공지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 지원4 ~ 공공 지원5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3〉에 따라 건축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m 이상의 도로가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 건축한계선 – 지원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 규정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3〉에 따라 건축 •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전면 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7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 건축설비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3〉에 따라 건축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3〉에 따라 건축
물류지원1 ~ 물류지원2 ~ 물류지원3		도면표시	• 물류
		허용용도	■ 주용도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물류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물류지원1-1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물류지원3에 한함)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부속용도(물류지원시설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3〉에 따라 건축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3〉에 따라 건축 •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첨단이미지를 지향할 것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조형적으로 처리할 것(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3〉에 따라 건축
		건축선	• 건축한계선 (대로변 : 2m, 중로변 : 1m)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3〉에 따라 건축
문화1		도면표시	• 문화
		허용용도	■ 주용도(복합문화시설 연면적의 30%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예식장 제외) ■ 부속용도 • 해당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6〉에 따라 건축
		형태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6〉에 따라 건축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에 따라 건축
		건축선	–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6〉에 따라 건축

다) 주거시설용지(변경)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2 ~ 단독3		도면표시	• 단독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 3층 ※ 1층의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4〉에 따라 건축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4〉에 따라 건축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 점포주택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평균 1개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한다. 2.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4.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담장 및 대문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담장의 재료, 색깔, 무늬를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4〉에 따라 건축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4〉에 따라 건축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1 ~ 공동2		도면표시	• 공동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9〉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9〉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9〉(변경)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
		주택의 규모	•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 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9〉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5〉에 따라 건축 •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을 권장한다. • 남향위주의 배치를 권장한다. • 가로축과 자연맥락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토록 한다. –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단, 차량 및 보행을 위한 진출입부분,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토록 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5〉에 따라 건축 • 건축물 1개동의 층수 변화를 3개층 이하로 한다. • 공동주택의 길이가 길수록 일조 및 조망의 측면에서 주거환경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동선상의 문제가 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층수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1동의 길이를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 4층 이하 부분 : 제한없음 • 5층 이상 : 공동주택은 6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필로티 – 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5〉에 따라 건축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5〉(변경)에 따라 건축

라)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1, 주차3, 주차5 ~ 주차6		도면표시	• 주차A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시설은 건축물의 지상3층 이하에 배치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6〉에 따라 건축
		형태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6〉에 따라 건축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에 따라 건축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m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6〉에 따라 건축
주차2, 주차4, 주차7		도면표시	• 주차B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형태	• 주차장의 형태는 평면주차장으로 계획한다.
		색채	-
		건축선	-
		기타	-
주유1 ~ 주유2		도면표시	• 주유
		허용용도	• 해당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부대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호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2m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기타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스1		도면표시	• 가스
		허용용도	• 해당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 부대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호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2m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기타	–
학교1		도면표시	• 학교
		허용용도	• 해당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학교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7〉에 따라 건축
		형태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7〉에 따라 건축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7〉에 따라 건축
		건축선	• 건축한계선 (완충녹지변 : 1m, 중로변 : 4m)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7〉에 따라 건축
회관1 ~ 회관2		도면표시	• 회관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마을회관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6〉에 따라 건축 •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6〉에 따라 건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에 따라 건축
		건축선	-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6〉에 따라 건축
청사1		도면표시	• 청사
		허용용도	• 해당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 파출소, 소방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6〉에 따라 건축
		형태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6〉에 따라 건축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에 따라 건축
		건축선	-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6〉에 따라 건축
공영 차고지1		도면표시	• 공영차고지
		허용용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별표6〉에 따라 건축
		형태	• 건축물의 형태는 〈별표6〉에 따라 건축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에 따라 건축
		건축선	• 건축한계선 (중로변 : 1m)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기타	•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6〉에 따라 건축

〈별표 1〉 생산용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 치	건축물 용 도	계 획 내 용
산업A	산업12-4~12~9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10.식료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C	산업12-1, 산업12-10~12-12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E	산업8-4	허용용도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24.1차 금속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F	산업11-5~11-8, 산업14-1~14-9	허용용도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25.금속가공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G	산업15-1, 산업15-5	허용용도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H	산업15-2, 산업15-3	허용용도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표시	위 치	건축물 용 도	계 획 내 용
산업I	산업1-1, 산업2-1, 산업10-3	허용용도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28.전기장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M	산업12-2,12-3, 산업12-13,12-14	허용용도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32.가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O	산업10-1, 10-2	허용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M70.연구개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P	산업3-1~3-4, 4-1~4-5, 5-1~5-7, 7-1, 8-1~8-3, 8-5~8-7, 9-1~9-12, 11-1~11-4, 11-9~11-11	허용용도	• 탄소융복합업종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중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Q	산업13-1~13-4, 산업16	허용용도	• 제한업종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표시	위 치	건축물 용 도	계 획 내 용
		불허용도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중분류 중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별표2〉 산업시설용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주요 진입부에서의 통경축을 고려하여 열린 배치로 개방감을 확보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가로의 방향과 일치 하도록 배치
형태	• 획일적인 형태는 지양하되, 블록 단위나 유사 업종 간 외관을 통일하여 일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연출한다. • 지붕을 평지붕으로 할경우 옥상조경을 적용을 권장
규모	• 권위적이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규모를 지양 • 건축물 폭이 30m 이상일 때는 시각적 분절을 권장
색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접된 건축물과 유사한 색채계열을 권장 • 자연 및 재료의 원색을 권장하며,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사용 • 건축물 색채계획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3〉 지원시설 건축경관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및 개방성을 확보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도로의 경계선으로 후퇴하여 건축
형태	• 인접건축물과의 볼륨감을 조절하여 균형미 있는 경관 유도 • 1층 도로에 면한 벽면은 70% 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적용 (물류지원시설 제외)
규모	•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인접된 건축물과 유사한 층수 (5층 이하) 적용으로 정돈된 경관을 유도 (물류지원시설 제외)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 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 건축물 색채계획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4〉 단독주택 건축경관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권장
형태	• 단독주택 용지내 주택은 경사지붕을 설치, 평지붕은 전체 3/10 이내에서 허용 • 개방감 및 조망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모의 조형요소 도입을 지양 • 동일 블록 내에서는 배치, 지붕형태, 담장 유형 등을 통일화하여 일체감을 유지
규모	• 고층의 건축물을 지양하고 3층 이하로 건축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접된 건축물과 유사한 규모를 권장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원재료의 색채를 권장 •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 색채계획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5〉 공동주택 건축경관 가이드라인(변경)

○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인접된 도로를 중심으로 조망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로 조망 및 개방감 확보 • 주변산지 및 조망을 고려한 배치로 통경축을 확보 하도록 한다.
형태	• 통경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의 목적으로 필로티 설치를 권장 • 일률적인 판상형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동 계획으로 변화감을 연출 • 입면의 형태와 연속성있는 옥탑부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일체감을 형성
규모	• 최고층수는 20층 이하로 계획하되 조망축(집산도로)을 중심으로 시야 확보를 고려한 층수를 산정하여 조망 및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색채	• 저층부와 상층부의 색채의 분절을 통해 위압감을 완화 하도록 권장 • 저층부는 석재, 벽돌 등 자연재료의 원색을 권장 • 건축물 색채계획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인접된 도로를 중심으로 조망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로 조망 및 개방감 확보 • 주변산지 및 조망을 고려한 배치로 통경축을 확보 하도록 한다.
형태	• 통경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의 목적으로 필로티 설치를 권장 • 일률적인 판상형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동 계획으로 변화감을 연출 • 입면의 형태와 연속성있는 옥탑부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일체감을 형성
규모	• 최고층수는 29층 이하로 계획하되 조망축(집산도로)을 중심으로 시야 확보를 고려한 층수를 산정하여 조망 및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색채	• 저층부와 상층부의 색채의 분절을 통해 위압감을 완화 하도록 권장 • 저층부는 석재, 벽돌 등 자연재료의 원색을 권장 • 건축물 색채계획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6〉 기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및 개방성을 확보 • 오픈스페이스로의 동선 및 조망을 고려
형태	• 복잡하고 과도한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고, 단순한 형태를 권장 • 주변 건축물들과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를 부여
규모	• 연접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층수 권장 • 저층부 높이는 3.5m 이상을 권장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재료의 원색을 권장 • 건축물 색채계획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7〉 학교 및 공공건축경관 가이드라인(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 건축물은 되도록 남향 배치를 권장 • 지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외부 공간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
형태	• 개방형 형태를 도입하고 투명 소재를 적극 도입 • 자연 소재를 활용하고 녹화를 적용하여 친근하고 자연적인 이미지 부여
규모	• 권위적이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규모를 지양 • 입면적이 넓을 경우 입체적 면 분할 등으로 시각적 위압감 완화
색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자연재료의 원색을 권장하며,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사용할 수 있음 • 건축물 색채계획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8〉 건축물 색채계획(변경없음)

<table>
<tr><th>구 분</th><th>조 성 기 준</th></tr>
<tr><td>기본방향</td><td>• 경산시 기본경관계획 경관 가이드라인의 용도별 색채 경관설계지침을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적인 자연환경 현황과 토지이용계획상 공간구분을 반영하여 건축용도별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대상지 색채환경의 연속성과 조화를 위해 주조색(기조색)은 유사색상 범위에서 선정하되, 저명도,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한다.</td></tr>
<tr><td>기본원칙</td><td>• 주변 환경(산지 및 인접된 경산3산단)의 색채와 조화로운 색채를 선정한다.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색채를 선정한다.
• 경관위계에 따른 색채를 선정한다.</td></tr>
<tr><td>색채적용 의범위</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주조색</td><td>• 건축외벽의 70% 이상 주조를 이루는 건물의 기본색
•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밝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을 주는 고명도 · 저채도위주의 색채를 적용</td></tr>
<tr><td>보조색</td><td>• 건축외벽의 10%~30%를 구성하며,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계열의 색상을 사용
• 주조색보다 저명도, 고채도로서 주조색과 배색조화를 통하여 건축물의 통일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세련된 배색 연출</td></tr>
<tr><td>강조색</td><td>• 건축물의 외장 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외벽의 5%~10%를 차지
• 건축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 및 중후감과 명확성을 나타내어 개성적인 색채 연출</td></tr>
</table>
</td></tr>
<tr><td>산업용지 색채 및</td><td>• 경산시 산업시설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기조성된 경산3 산업단지 색채 현황을 고려하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계획한다.</td></tr>
</table>

구 분	조 성 기 준
설계지침	• 설계지침 – 건축물의 기능성이 부각되며 연속성 있고 쾌적한 이미지 연출 – 외장색의 주조색은 70% 이상, 보조색은 30% 이내, 강조색은 5% 이내의 면적 연출 권장 – 입면에 사용하는 색은 가급적 3색 이내로 계획하고 유사색 범위에서 톤 변화에 의한 배색 – 장방향의 건축물은 세로로 분절하여 변화감 있는 설계 – 지붕색은 갈색이나 회색계열 등의 저채도색을 사용하고 단지별로 동일색 사용으로 통일성 유지 – 넓은 면적에 고채도의 강조색을 사용하거나 그래픽 사용하는 것을 금지
단독주택 색채 및 설계지침	• 경산시 단독주택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주거용지 특성을 고려한 쾌적하고 정연화된 색채를 계획한다. • 설계지침 – 인접 건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색채 연출 – 외장색의 주조색은 60% 이내, 보조색은 30% 이내, 강조색은 10% 이내의 면적으로 연출 권장 – 건축입면에 사용하는 색은 가급적 단색 적용하고 1색 이상 사용 시 유사색 적용 – 1층이 상업용도일 경우 1층과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하고 저층부는 저채도색 사용 권장 – 건축물 입면이나 담장에 벽화 등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지붕색은 갈색이나 회색계열 등을 사용하고 농촌취락 등은 마을별로 동일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 유지
공동주택 색채 및 설계지침	• 경산시 공동주택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하여 단지별로 통일된 이미지 연출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계획한다. • 설계지침 – 원경에서 단지별로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주변 건물과의 색차를 줄여 연속성 유지 – 외장색의 주조색은 70% 이상, 보조색은 20~30% 이내, 강조색은 5% 이내의 면적 연출 권장

구 분	조 성 기 준
	- 탑상형은 건축입면의 면 분할을 통해 분절효과를 주고 단조로운 입면에 변화감을 주도록 연출 - 측벽 및 입면에 문양, 그림, 글씨 등과 같이 과도한 그래픽 사용 지양 - 지붕색은 갈색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고 단지별로 동일 색을 사용하여 통일성 유지 - 담장, 옹벽, 펜스 등은 건축물보다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고 은폐되도록 계획
공공건축 색채 및 설계지침	• 경산시 공공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공공건축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자연친화적 이미지 연출을 위한 색채를 계획한다. • 설계지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상징성 있고 신뢰감을 높이는 쾌적한 느낌의 색채계획 - 외작생의 주조색은 50% 이상, 보조색은 30% 내외, 강조색은 10% 이내의 면적 연출 권장 - 외장색의 주조색과 보조색은 흑색량이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권장 -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의 지붕과 같이 외부에서 보이는 넓은 면적은 순색량 30 이하로 적용 권장 - 외부에 노출되는 창틀과 설비시설은 입면색과 유사계열을 사용하여 돌출 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펜스 등은 순색량 20 이하의 저채도색을 2가지 이내로 사용하고 수목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유도

〈별표9〉 공동주택(아파트)의 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 최고층수(변경)

○ 기정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합 계		133,700	2,368	6,039	-	-	-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공동1	60㎡ 초과 ~ 85㎡ 이하	53,653	950	2,423	20층	30	200
공동2	60㎡ 초과 ~ 85㎡ 이하	80,047	1,418	3,616	20층	30	200

○ 변경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합 계		133,700	2,368	6,039	-	-	-
공동1	60㎡ 초과 ~ 85㎡ 이하	53,653	950	2,423	29층	30	200
공동2	60㎡ 초과 ~ 85㎡ 이하	80,047	1,418	3,616	29층	30	200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38)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17호

계측업 신규 등록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계측업을 신규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경북 제2021-2호	㈜동성엔지니어링 (이상규)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21길 41(옥산동)	2021.10.12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1 -1723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전자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연번	공 인 명	인 영	최초사용 년 월 일
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인	 2.1cm 정방형	2021.10.18.

□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연번	공 인 명	인 영	최초사용 년 월 일
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인	 2.1cm 정방형	2021.10.18.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24호

경상북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후 이를 공고합니다.

연번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업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1	2021.10.13.	제03-16-0019호	조경업	일등종합문화재㈜ 대표 김기호	경북 경주시 초당길55번길 6, 상가동 206호 (동천동, 삼성아파트)

2021.10. 18.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26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 기간 : 2021. 10. 18. ~ 2021. 11. 1.(15일간)

2. 공고 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행정처분
주식회사열린씨앤씨 (김선희)	건축공사업 (05-08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42-8(양덕동)	영업정지(5개월) (2021.10.25.~2022.03.24.)

나. 처분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라. 처분일자 : 2021. 9. 24.

3. 귀 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영업정지 전일까지 경북도청(도시계획과)으로 제출하여 처분사실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본 처분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통지하여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규정에 위반(건설공사 신규계약 등)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5.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처분의 원인이 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여 그 자료를 경북도청(도시계획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공고 제2021-1727호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된 부동산개발업을 「같은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소재지	말소일자	폐업사유
경북170001호	씨엠종합건설(주) (정 재 만)	200111-0420524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10-15, 506호	2021.10.13	전문인력 부족 및 사업부진
경북170004호	㈜우딘산업개발 (김 동 우)	171411-0023526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2길 33, 202동 201호	2021.10.13	사업부진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3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418	뉴 정보통신 (변형종)	경북 구미시 봉곡로49(봉곡동, 2호)	2021.10.15.

끝.

2021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1-173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417	에스엠테크 주식회사 (최은혜)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5	2021.10.15.

끝.

2021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

경주시 고시 제2021 - 265호

서동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산28-8번지 일원의 서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1. 10. 18.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서동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산28-8번지 일원

다. 면 적

1) 산 업 단 지 : 269,994.1㎡

2) 구역 외 도로 : 2,499.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일원에 실수요자[㈜세진, ㈜천지테크] 개발방식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세진의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신설공장(스포일러 및 범퍼 제조)의 추가 조성과 본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주)천지테크]에 대하여 필요한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기업의 제조활동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기 정	변 경
○㈜세진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167-42 대표이사 김 민 규 ○㈜천지테크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167-42 대표이사 신 민 권	○㈜세진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167-42 대표이사 김 종 찬 ○㈜천지테크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167-42 대표이사 추 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당초 - 2010. ~ 2021. 06. 30.

변경 - 2010. ~ 2021. 12. 31.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3항1호 나목에 의한 실수요자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경주시 고시 제2021 - 267호

경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천북배수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1-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천북배수지)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8.

경 주 시 장

1. 사업시행위치 :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1-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3. 사업의 명칭 : 천북면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천북배수지)

4. 면 적 : 당초 A=3,500m2 → 변경 A=3,554m2

5. 사업 시행자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경주시 백률로 65-4)

6. 변 경 사 유 : 지적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에 의한 지번 및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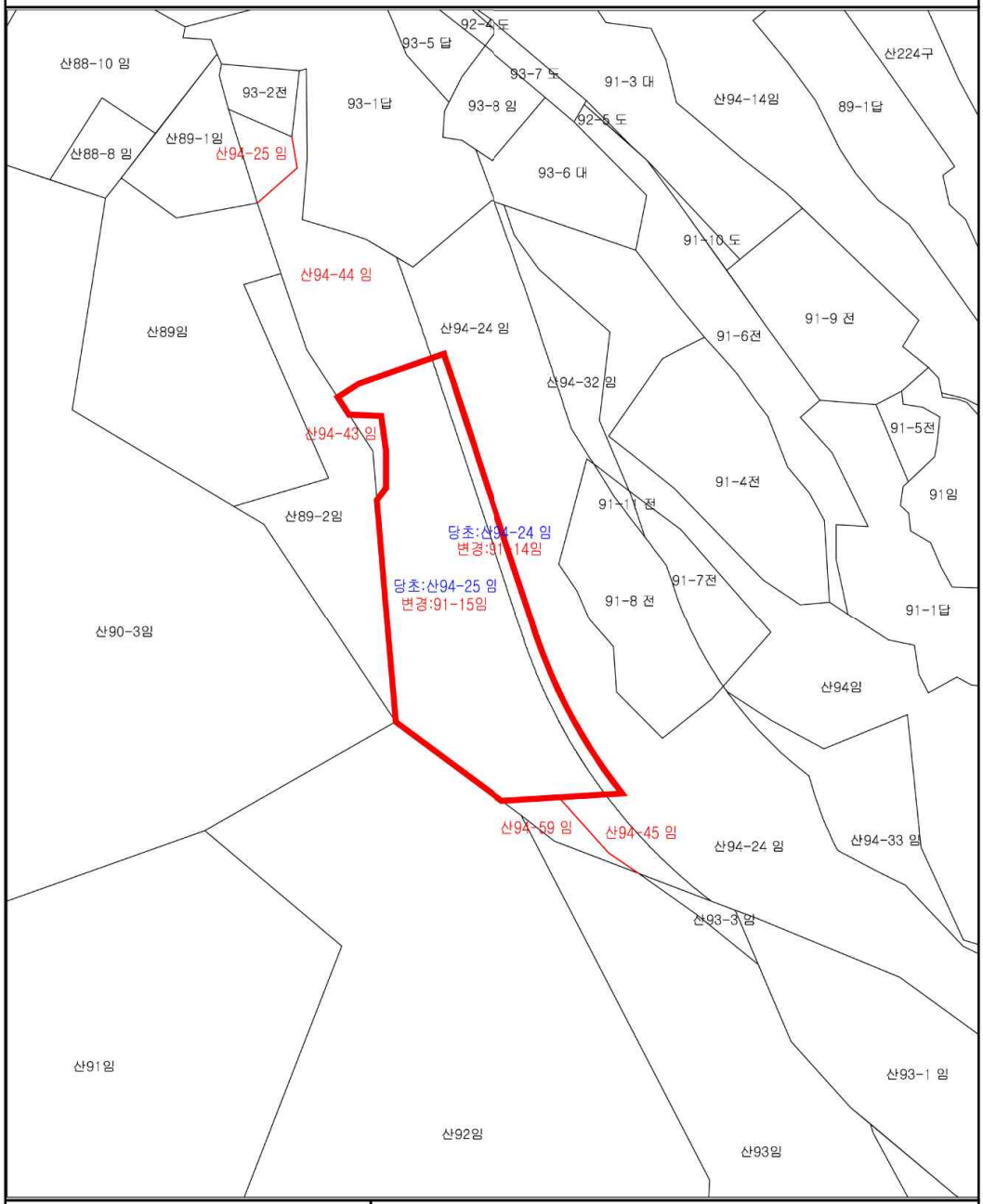
7. 착공 및 준공예정일 : 2020년 ~ 2021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전용면적(m2)	구성비(%)	소유자	비고
당초	천북면 화산리	산94-24임	387.5	11.1	㈜태영건설	
변경	천북면 화산리	91-14임	344.0	9.7	㈜태영건설	
당초	천북면 화산리	산94-25임	3,112.5	88.9	㈜태영건설	
변경	천북면 화산리	91-15임	3,210.0	90.3	㈜태영건설	
계		2필지	3,500.0	100.0		
		2필지	3,554.0	100.0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054-760-783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구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배수지 신설 면적 변경 : A = 3,500㎡ → 3,554㎡ 증)54㎡

김천시 고시 제2021 - 118호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2. 실효대상 연접시설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8.

김 천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실효) 조서

[김천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주요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대로	3	11	25	주간선도로	1,080	대로1-1	대로1-5	일반도로	경고제325호 2001-10-19		노선폐지
폐지	대로	3	14	25	주간선도로	1,375	대로1-4	중로1-40	일반도로	경고제325호 2001-10-19	월곡리 주거지역	노선폐지
기정	대로	3	18	25	주간선도로	757	대로3-17	대로3-19	일반도로	경고제325호 2001-10-19	공절 자연취락지구	
변경	소로	2	204	9	주간선도로	728	중로2-국도59	지좌동 796-2	일반도로	〃	공절 자연취락지구	폭원축소
폐지	대로	3	17	25	주간선도로	4,420	대로1-3	국도 4호선	일반도로	경고제325호 2001-10-19	덕곡동 주거지역	노선폐지
기정	대로	3	19	25	주간선도로	662	대로3-20	대로3-18	일반도로	〃	황금동 김천연결	노선축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주요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대로	3	19	25	주간선도로	215	대로3-20	대로1-3	일반도로	경고제325호 2001-10-19	황금동 김천연결	
폐지	대로	3	23	25	주간선도로	44	9호광장	대로3-6	일반도로	경고제325호 2001-10-19	금산동 주거지역	노선폐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1	-	· 노선폐지 - B = 25m, - L = 1,080m	·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대로3-14	-	· 노선폐지 - B = 25m, - L = 1,375m	·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대로3-18	소로2-204	· 폭원축소, 선형변경 - B = 25m → 9m (감 16m) - L = 757m → 728m (감 29m)	·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폭원축소
대로3-17	-	· 노선폐지 - B = 25m, - L = 4,420m	·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대로3-19	대로3-19	· 노선축소 - L = 662m → 215m (감 447m)	·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축소
대로3-23	-	· 노선폐지 - B = 25m, - L = 44m	·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	금산 공원	근린 공원	문당동 410일원	132,300	감) 132,300	-	경고제274호 2001-10-19	폐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금산공원	· 근린공원폐지 - A = 132,300㎡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폐지

나)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61	신음동 준공업 지역 남측	완충 녹지	신음동 대로3-6호선 남측	3,050	감) 3,050	-	경고제274호 2001-10-19	폐지
폐지	62	응명동 공업 지역 남측	완충 녹지	응명동 완충녹지 남측	2,816	감) 2,816	-		폐지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1	신음동 준공업지역 남측	· 완충녹지폐지 - A = 3,050㎡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폐지
62	응명동 공업지역 남측	· 완충녹지폐지 - A = 2,816㎡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폐지

[대항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4	대항 9	4	국지 도로	160	소로2-대항1	소로4-대항11	일반 도로	경고제136호 1976-07-20		
변경	소로	4	대항 9	4	국지 도로	43	소로2-대항1	소로4-대항11	일반 도로	〃		노선 축소
기정	소로	4	대항 10	4	국지 도로	106	소로3-대항1	소로4-대항11	일반 도로	경고제136호 1976-07-20		
변경	소로	4	대항 10	4	국지 도로	66	소로3-대항1	소로4-대항11	일반 도로	〃		노선 축소
폐지	소로	4	대항 11	4	국지 도로	23	소로4-대항10	소로4-대항9	일반 도로	경고제136호 1976-07-20		노선 폐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4-대항9	소로4-대항9	· 노선축소 - L = 160m → 43m (감 117m)	·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4-대항10	소로4-대항10	· 노선축소 - L = 106m → 66m (감 40m)	·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4-대항11	-	· 노선폐지 - B = 4m, - L = 23m	· 미집행구간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지례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지례 2	20	보조 간선 도로	3,010	상부리 구역계	교리 구역계	일반 도로	경고 제131호 1978-04-28		
변경	중로	1	지례 2	20	보조 간선 도로	2,131	상부리 구역계	지례면 교리838	일반 도로	〃		노선 축소
변경	소로	1	지례 2	10	보조 간선 도로	879	지례면 교리838	교리 구역계	일반 도로	〃		노선 번호 신설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지례2	중로1-지례2	· 노선축소 - L = 3,010m → 2,131m (감 879m)	· 미집행 폭원 실효구간 노선분리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1-지례2	· 노선번호신설(노선분리) - B = 10m, - L = 879m	· 미집행 폭원 실효구간 노선분리

나. 실효일자 : 2021. 10. 19.

다.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조서

[김천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5	25	주간선도로	352	대로1-1	대로3-17	일반도로	경고 제325호 2001-10-19	덕곡동 주거지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주요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대로	3	15	25	주간선도로	352	대로1-1	대로3-17	일반도로	경고 제325호 2001-10-19	덕곡동 주거지역	가각폐지
기정	중로	1	35	20	보조간선도로	682	대로3-17	대로3-14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월곡리 주거지역	
변경	중로	1	35	20	보조간선도로	682	대로3-17	대로3-14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월곡리 주거지역	가각폐지
기정	중로	2	11	15	보조간선도로	580	대로3-11	소로3-3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주거지역	
변경	중로	2	11	15	보조간선도로	580	대로3-11	소로3-3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주거지역	가각폐지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565	덕곡동 대로1-4	덕곡동 소로1-53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상업지역내	
변경	소로	1	56	10	국지도로	565	덕곡동 대로1-4	덕곡동 소로1-53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상업지역내	가각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주요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9	7~15	주간선도로	589	대로3-17	중로1-3	일반도로	경고 제39호 1987-03-12	경부선 철도	
변경	중로	2	9	7~15	주간선도로	589	대로3-17	지좌동796-2	일반도로	〃	경부선 철도	가각폐지
기정	중로	2	23	15	보조간선도로	610	대미1-1	덕곡동 대로3-17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변경	중로	2	23	15	보조간선도로	610	대미1-1	덕곡동 대로3-17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가각폐지
기정	중로	2	국도59	10~15	주간선도로	28,700	감문면 태촌리 2-5	조마면 대방리	일반도로	경고 제361호 2009-08-06	김천도시지역	
변경	중로	2	국도59	10~15	주간선도로	28,700	감문면 태촌리 2-5	조마면 대방리	일반도로	경고 제361호 2009-08-06	김천도시지역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32	13	집산도로	417	덕곡동 중로2-24	덕곡동 대로3-17	일반도로	김고 제919호 2015-07-02	덕곡동 준주거지역 남측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주요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3	32	13	집산도로	417	덕곡동 중로2-24	덕곡동 대로3-17	일반도로	김고 제919호 2015-07-02	덕곡동 준주거지역 남측	가각폐지
기정	중로	3	33	13	집산도로	105	덕곡동 소로1-67	덕곡동 대로3-17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변경	중로	3	33	13	집산도로	105	덕곡동 소로1-67	덕곡동 대로3-17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가각폐지
기정	중로	3	45	12	집산도로	615	대로3-17	중로1-3	일반도로	김고 제475호 2017-07-13	감천변	
변경	중로	3	45	12	집산도로	615	대로3-17	중로1-3	일반도로	김고 제475호 2017-07-13	감천변	가각폐지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로	531	덕곡동 대로3-17	덕곡동 중로2-23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지좌동 교도소 동측 주거지	
변경	소로	1	58	10	국지도로	531	덕곡동 대로3-17	덕곡동 중로2-23	일반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지좌동 교도소 동측 주거지	가각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2	10	국지 도로	258	덕곡동 대로3-17	덕곡동 소로1-61	일반 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덕일 아파트 통과도로	
변경	소로	1	62	10	국지 도로	258	덕곡동 대로3-17	덕곡동 소로1-61	일반 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덕일 아파트 통과도로	가각 폐지
기정	소로	1	65	10	국지 도로	383	덕곡동 대로1-1	덕곡동 대로3-17	일반 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사무실 진입로	
변경	소로	1	65	10	국지 도로	383	덕곡동 대로1-1	덕곡동 대로3-17	일반 도로	김고 제153호 2002-03-16	덕곡동 사무실 진입로	가각 폐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5	대로3-15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중로1-35	중로1-35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4호선, 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9	중로2-9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중로2-11	중로2-11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1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소로1-56	소로1-56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1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중로2-23	중로2-23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중로2-국도59	중로2-국도59	· 선형변경	· 접속도로(대로3-18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3-32	중로3-32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중로3-33	중로3-33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중로3-45	중로3-45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소로1-58	소로1-58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소로1-62	소로1-62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소로1-65	소로1-65	· 가각폐지	· 접속도로(대로3-17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가각폐지

[대항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주요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대항1	6	국지도로	515	중로1-대항1	소로4-대항9	일반도로	경고제136호 1976-07-20		
변경	소로	3	대항1	6	국지도로	515	중로1-대항1	소로4-대항9	일반도로	〃		가각폐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대항1	소로3-대항1	· 가각폐지	· 접속도로(소로4-대항9호선) 노선축소(실효)에 따른 가각폐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 건설도시과(054-420-67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경산시 고시 제2021 -16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영남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대동 214-1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영남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영남대학교	대학	대동 214-1번지 일원	2,519,738.3	증) 165.0	2,519,903.3	건고제9호 (83.01.1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영남대학교	○ 학교 면적 변경 -A= 2,519,738.3㎡ → 2,519,903.3㎡ 증 165㎡	○ 지적의 분할·등록전환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2,519,738.3	증) 165.0	2,519,903.3	
변경	가	교육연구시설	조영동 321번지 일원	737,057.0	증) 10,363	747,420.0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나	주차장	삼풍동 224번지 일원	83,721.0	감) 3	83,718.0	
변경	다	녹지	갑제동 산109번지 일원	1,408,246.3	감) 10,728	1,397,518.3	
기정	라	운동장	계양동 105번지 일원	107,431.0	-	107,431.0	
변경	마	도로	대동 258번지 일원	166,889.0	증) 534	167,423.0	
변경	바	기타 (원형보전)	갑제동 304번지 일원	16,394.0	감) 1	16,393.0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면적변경 - A = 737,057.0㎡ → 747,420.0㎡ 증) 10,363㎡	○ 독도자연생태온실 및 묘포장지 조성에 따른 면적변경(증 A=10,825㎡) ○ 지적 분할·등록전환에 따른 면적변경(감 A=230㎡) ○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지적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감 A=232㎡)
나	주차장	○ 주차장 면적변경 - A = 83,721.0㎡ → 83,718.0㎡ 감) 3㎡	○ 지적 분할·등록전환에 따른 면적변경(감 A=3㎡)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다	녹지	○ 녹지 면적변경 – A = 1,412,478.3㎡ → 1,397,518.3㎡ 감) 10,728㎡	○ 독도자연생태온실 및 묘포장지 조성에 따른 면적변경(감 A=10,825㎡) ○ 지적 분할·등록전환에 따른 면적변경(증 A=178㎡) ○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지적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감 A=81㎡)
마	도로	○ 도로 면적변경 – A = 166,889.0㎡ → 167,423.0㎡ 증) 534㎡	○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지적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증 A=534㎡)
바	기타 (원형보전)	○ 기타(원형보전) 면적변경 – A = 16,394.0㎡ → 16,393.0,㎡ 감) 1㎡	○ 지적 분할·등록전환에 따른 면적변경(감 A=1㎡)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별첨(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영양군 고시 제2021-115호

영양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일원 영양·입암 통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 10. 18.

영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영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수도공급설비 (영양통합 정수장)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201-7번지 일원	-	증)23,767	23,767	-	

나.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②	수도공급설비 (영양통합정수장)	• 수도공급설비 신설 A = 23,767㎡	• 영양군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 용량 확장을 통한 보다 개선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영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영양군 지역개발과(☏ 054-680-634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경주시 공고 제2021 - 2395호

도시계획시설[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열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 칭 :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3. 사업의 규모 : A=9,089㎡(지상2층, 연면적 1,793.21㎡)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주시장 주낙영

○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5. 사업의 시행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23. 12. 31

6. 열람기간 : 2021년 10월 18일 ~ 2021년 11월 1일(14일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8.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경주시청 미래사업추진단

(경주시 양정로 260, ☏779-6810)

9.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2021년 10월 18일

경 주 시 장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4필지	9,178	9,089					
1	감포읍 대본리	646-5	전	635	635	경주시				
2	감포읍 대본리	646-8	도	29	29	경주시				
3	감포읍 대본리	671	학	8,438	8,356	경주시				
4	감포읍 대본리	676-4	도	76	69	경주시				

안동시 공고 제2021-2291호

안동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119-1번지 일원 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안동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따라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1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 명 칭 : 안동 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결정(변경)면적 : 175,757.6㎡ → 176,509.9㎡ 증) 752.3㎡

○ 금회 사업시행면적 : 46,783㎡

1) 공사현황

가. 토 공 - 흙깎기(토사)-138,654㎥, 흙깎기(풍화암)-144,484㎥

흙쌓기-0.0㎥, 터파기-7,566㎥, 되메우기-10,770㎥

나. 배수공 - 원형맨홀(D900)-27EA, 원형맨홀(D1200)-10EA,

원형맨홀(D1500)-1EA,우수관(D450) L=1,025m,

우수관(D600) L=120m,집수정(0.5x0.5)-4EA,

집수정(0.6x0.6)-2EA,빗물받이(0.4x0.3)-83EA

연결관(D200)-124m,(D250)-439m,(D300)-47m

플륨관(0.4×0.4) L=1,291m

다. 포장공 - 아스콘포장(T=750mm)- 13,656㎡,

아스콘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T=50mm)- 1,538㎡,

보차도 경계석(200×250×1,000)- 1,844m

라. 부대공 - 법면보호공(자연생태복원)- 5,072㎡, 성토부(줄떼)- 110㎡,

조경석쌓기(H=0.3~2.0m)- 23㎡, 디자인휀스(H=1.5, W=2.0m)-256m)

마. 옹벽공 - 절토부 옹벽(H=0.0~11.0m)-564.1m

바. 식재공 - 소나무 17주, 스트로브잣나무 55주, 느티나무 80주, 매화나무 4주, 배롱나무 12주, 백목련 10주, 산수유 17주, 왕벚나무 32주, 이팝나무 94주, 중국단풍 32주, 청단풍 13주, 팽나무 1주, 남천 900주, 회양목 400주, 꽃댕강 600주, 백철쭉 1,400주, 산철쭉 1,800주, 영산홍 1,100주, 조팝나무 1,300주, 황매화 500주, 흰말채나무 300주, 잔디식재 6,634.50㎡

사. 건축공 - 지상1층 4,542.54㎡(경매장, 선별장, 출하장, 5t출하장, 집배송시설, 소포장시설, 도매점포, 저온저장고, 출하쉼터, 공용공간, 기계실, 방재실, 창고, 방풍실, 계단실, 화장실, 쓰레기집합소, 복도, EPS/TPS),

지상2층 1,140.17㎡(사무실, 직원휴게실, 숙직실, 구내식당, 매점, 공용공간, 복도, 계단실, 화장실, 창고, EPS/TPS)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명륜동)

5.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등기부상)	비고
	면	리					주 소	성명		
1	풍산	노	801-2	공	3,485	3,485	공	안동시		
2	풍산	노	산119-1	임	28,420	28,420	공	안동시		
3	풍산	노	산120	임	14,728	14,728	공	안동시		
4	풍산	노	산268	구	18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5	풍산	노	산269	구	132	132	국	국토교통부		
계					46,783	46,783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공람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6342), 유통특작과(☎054-840-5341)

9. 의견제출

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청송군 공고 제2021-816호

청송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의『부곡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송군청 농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1. 10. 18. ~ 2021. 11. 4.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청송군청 농정과

3. 계획범위

-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4.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6. 관련도서는 공고기간 중 청송군청 농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송군청 농정과(☎054-870-6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청 송 군 수

청송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 상 지	의견제출 대상 지역 상세 위치(지번 등) 기재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351-17 일원	
제출의견		

영양군 공고 제2021-784호

영양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10번지 일원의 영양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8.

영 양 군 수

1. 군계획시설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영양소방서 신축공사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5-10번지 일원	16,509	경상북도지사 영 양 군 수	실시계획인가일 ~ 2022년 12월

2. 열람기간 : 2021. 10. 18. ~ 2021. 11. 2.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팀

4.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팀(054-680-63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및 도면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편 입 용 지 조 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17,195	16,509						
1	영양읍 현 리	905-13	과	560	423	영양군	-				
2	영양읍 하원리	343-8	전	1,535	1,535	〃	-				
3	〃	343-9	전	1,841	1,841	〃	-				
4	〃	343-10	대	337	337	〃	-				
5	〃	343-29	목	207	206	〃	-				
6	〃	343-30	전	66	62	〃	-				
7	〃	343-34	목	755	755	〃	-				
8	〃	343-35	목	142	141	〃	-				
9	〃	343-42	목	107	62	〃	-				
10	〃	343-43	목	464	129	경상북도	-				
11	〃	434-44	전	25	1	경상북도	-				
12	〃	343-45	목	32	32	경상북도	-				
13	〃	345-1	과	5,200	5,061	영양군	-				
14	〃	345-8	과	93	93	〃	-				
15	〃	345-9	과	294	294	〃	-				
16	〃	345-10	과	5,537	5,537	〃	-				

청도군 공고 제2021 - 1162호

청도 군계획시설사업(소로3-38, 소로3-43)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청도 군계획시설사업(소로3-38, 소로3-43)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청 도 군 수

1. 공람(열람)기간 : 2021. 10. 18. ~ 11. 5.(18일간)

2.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유 : 도시계획도로 폭 변경

구분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고
군계획 시설	고수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38호)개설공사	교통시설 (도로)	청도읍 고수리 908-11번지 일원	B = 6m → 8m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6. 30.	
	고수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43호)개설공사	교통시설 (도로)	청도읍 고수리 894-2번지 일원	B = 6m → 8m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 성명 : 청도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있음, 토지 및 물건추가) : 붙임 참조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 비치

6.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비치 및 공람장소 : 청도군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 의견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내
- 의견제 출 처 : 청도군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7.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청 도시과 (054-370-2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고수리 소로3-38호, 소로3-43호) - 변경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청도읍 고수리	965-4	965-6	대	178	21	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보훈아파트*-***				
2	청도읍 고수리	908-3	908-14	대	457	1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청도축산업협 동조합	청도읍 고수서4길 1	근저당	
3	청도읍 고수리	908-3	908-15	대	457	2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청도축산업협 동조합	청도읍 고수서4길 1	근저당	
4	청도읍 고수리	908-11	908-11	대	146	146	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5	청도읍 고수리	947-3	947-38	대	307	24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_*				
6	청도읍 고수리	947-28	947-39	대	132	25	송**	경북 청도군 청도읍 뒷마*길 *_*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	청도읍 고수리	904-3	904-10	대	96	75	정**	대구 북구 관음동로 ***(관음동)				
8	청도읍 고수리	908-5	908-17	대	274	160	정**	대구 북구 관음동로 ***(관음동)	남산새마을금고	대구 중구 남산로4길 64	근저당 지상권	
9	청도읍 고수리	908-4	908-16	대	1018	46	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10	청도읍 고수리	907	907-1	대	476	187	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11	청도읍 고수리	907	907-2	대	476	100	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12	청도읍 고수리	904-1	904-8	대	109	73	정**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 *동***호(범어동, 우방범어타운)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3	청도읍 고수리	906-3	906-4	대	350	24	이**	경북 경산시 성암로*길**, ***동***호(옥산동, 청구타운)				49/106
14	청도읍 고수리	906-3	906-4	대	350	24	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구미길 **				48/106
15	청도읍 고수리	906-3	906-4	대	350	24	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_*				9/106
16	청도읍 고수리	904-4	904-12	대	294	169	장**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_*				
17	청도읍 고수리	904-6	904-14	대	43	1	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길 **_*, ***호	대구대서 신용협동조합 예스캐피탈 대부주식회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05 서울중구수표로2311층,4층 403호	가압류 가압류	
18	청도읍 고수리	904-7	904-15	대	86	28	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_**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9	청도읍 고수리	902	902-6	대	83	20	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20	청도읍 고수리	902-2	902-10	대	102	51	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21	청도읍 고수리	902-3	902-11	대	145	107	박**	경남 밀양시 교동 ***-**				
22	청도읍 고수리	902-1	902-8	대	185	1	정**	대구 동구 효신로*길 **-*(효목동)				38/56
23	청도읍 고수리	902-1	902-9	대	185	17	정**	대구 동구 효신로*길 **-*(효목동)				38/56
24	청도읍 고수리	902-1	902-8	대	185	1	김**	대구 북구 신천동로 ***길 **-*(대현동)				18/56
25	청도읍 고수리	902-1	902-9	대	185	17	김**	대구 북구 신천동로 ***길 **-*(대현동)				18/56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6	청도읍 고수리	902-4	902-13	대	93	1	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27	청도읍 고수리	895	895-3	대	440	1	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28	청도읍 고수리	901	901-1	전	298	96	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청도농업협동조합	청도읍 고수리 800	근저당	
29	청도읍 고수리	900	900-1	전	906	122	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청도농업협동조합	청도읍 고수리 800	근저당	
30	청도읍 고수리	893	893-1	대	109	62	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31	청도읍 고수리	893	893-2	대	109	6	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32	청도읍 고수리	894	894-3	대	215	27	조**	경북 청도군 청도읍 뒷마*길 *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3	청도읍 고수리	894-2	894-6	대	162	119	정**	대구 수성구 매호동 **** 유성시지랑스빌** *-***				
34	청도읍 고수리	894-1	894-4	대	198	40	박**	대구 달서구 비슬로***길 **, ***동****호 (대곡동, 대곡역금강*단지)	대구지방법원		가압류	
35	청도읍 고수리	889-6	889-10	대	159	26	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36	청도읍 고수리	889-4	889-8	전	591	270	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정읍 석정로 ***-**(우방 신천지타운), ***동 ****호				
37	청도읍 고수리	888-4	888-11	전	1121	239	박**	부산 사상구 사상로 ***, 덕포동 주식회사	산동농업협동조합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43-1	근저당 지상권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산종합철강	이영규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66, 102동 3204호	근저당	
38	청도읍 고수리	888-7	888-12	전	366	83	박**	부산 사상구 사상로 ***, 덕포동 주식회사 당산종합철강	산동농업협동조합 이영규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43-1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66, 102동 3204호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39	청도읍 고수리	1029	1029-7	전	1203	265	박**	부산 사상구 사상로 ***, 덕포동 주식회사 당산종합철강	산동농업협동조합 이영규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43-1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66, 102동 3204호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40	청도읍 고수리	1029-3	1029-10	대	93	63	정**	대구 북구 학정동로**,				1/3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동 ***호 (학정동, 칠곡*차 한라하우젠트)				
41	청도읍 고수리	1029-2	1029-9	대	273	67	정**	대구 북구 학정동로**, ***동 ***호 (학정동, 칠곡*차 한라하우젠트)				191/ 273
42	청도읍 고수리	1029-3	1029-10	대	93	63	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				1/27
43	청도읍 고수리	1029-3	1029-10	대	93	63	이**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길 **				1/27
44	청도읍 고수리	1029-3	1029-10	대	93	63	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 ***동 ***호(지산동, 지산우방타운				1/27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5	청도읍 고수리	1029-3	1029-10	대	93	63	전**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길 **, 가동 ***호(청도 라온빌리지)				3/27
46	청도읍 고수리	1029-3	1029-10	대	93	63	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 ***호(대웅맨션)				3/27
47	청도읍 고수리	1029-3	1029-10	대	93	63	안**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1/3
48	청도읍 고수리	1029-2	1029-9	대	273	67	박**	경남 진주시 옥봉동 ***				82/273
49	청도읍 고수리	1029-4	1029-12	대	300	78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50	청도읍 고수리	1029-4	1029-12	대	300	78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1	청도읍 고수리	889-2	889-7	대	195	2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52	청도읍 고수리	892-19	829-22	묘	234	53		국(재무부)				
53	청도읍 고수리	892-19	892-24	묘	234	37		국(재무부)				
54	청도읍 고수리	892-6	892-20	묘	175	10		국(재무부)				
55	청도읍 고수리	892-18	892-21	묘	126	2		국(재무부)				
56	청도읍 고수리	1064		도	653	81		국(국토교통부)				
57	청도읍 고수리	1041-2		구	1,249	97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청도읍 고수리	897-6		전	248	3	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구분	위치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9	청도읍 고수리	산62-2 7		임	526	31	장**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수성중앙 새마을금고		근저당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고수리 소로3-38호, 소로3-43호) - 변경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1	청도읍	고수리	965-6	주택	목조 스레트지붕 (1.6×2+3.2×2.7+3.3×2.7+3.3×2.4+5.1×1.8+3.8×3.4)	50.77	㎡	김**	부산해운대구반여동***-** 보훈아파트*-***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3×2)	6.00	㎡			
				가닥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5.1×2)	10.20	㎡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주택 및 창고	목조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6×3+2.8×3.2)	26.96	㎡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4×2)	8.00	㎡			
				대문(식)	목재 (문주및스레트 지붕포함)	1.00	식			
				담장(식)	블록조	14.00	m			
				출입계단(식)	콘크리트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50.00	㎡			
				장독대(식)	콘크리트 (3.5×1.4)	1.00	식			
				아궁이(식)	콘크리트	1.00	식			
2	청도읍	고수리	908-15	담장	블록조	35.00	m(식)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감나무	35년	3.00	주(일괄)			
				감나무	20년	1.00	주			
				앵두나무	30년	2.00	주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무궁화나무	20년	5.00	주			
3	청도읍	고수리	947-38	창고	목조 스레트 (하부수도대포함)	8.90	㎡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창고 및 화장실	블록조 스레트지붕	15.90	㎡			
				담장 (보수비포함)	블록조	4.00	m(식)			
				감나무	25년	1.00	주(일괄)			
				석류나무	40년	1.00	주			
				꽃나무	10년	1.00	주			
4	청도읍	고수리	947-39	화장실	블록조 스레트지붕 (2×2)	4.00	㎡(식)	송**	경북 청도군 청도읍 뒷마*길 *-*	
				가닥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3×3)	9.00	㎡			
				대문	목재 (문주포함)	1.00	식			
				입구계단	콘크리트	1.00	식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장독대	콘크리트 (4×1.2)	1.00	식			
				담장	블록조	8.00	m(식)			
				담장 (보수비포함)	토담	5.00	m(식)			
5	청도읍	고수리	904-10	화장실	블록조 스레트지붕 (2.5×2)	5.00	㎡(식)	정**	대구 북구 관음동로 ***(관음동)	
				창고	목조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5×3)	15.00	㎡			
				대문	철재(철주포함)	1.00	식			
				담장	블록조	4.00	m(식)			
				감나무	35년	1.00	주			
	청도읍	고수리	908-17	주택	블록조 스레트지붕 (6×3.5)	21.00	㎡	김**	청도읍 고수리	
				가닥	목조 스레트지붕 (6×2.2)	13.20	㎡			
				담장	블록	23.00	m(식)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오가피나무	10년	3.00	주(일괄)	정**	대구 북구 관음동로 ***(관음동)	
				뽕나무	10년	1.00	주			
6	청도읍	고수리	908-16	복숭아나무	5년	1.00	주(일괄)	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오가피나무	10년	1.00	주			
7	청도읍	고수리	907-1 907-2	주택	벽돌조 판넬 및 강판기와지붕 (7.2×12.5+9×1.9+ 10×2+5.4×1.8)	136.82	㎡	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보일러실	블록조 및 판넬조 판넬및스레트지붕 ((2.7+1.9)×5.8/2)	13.34	㎡			
				가닥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2.5×9+4.4×3.5)	37.90	㎡			
				화장실	블록조 슬라브지붕 (2×2)	4.00	㎡(식)			
				창고	목조 썬라이트지붕 (3×2)	6.00	㎡(식)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7	청도읍	고수리	907-1 907-2	대문	SUS(문주포함)	1.00	식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입구계단	화강석 (2.5×1.4)	1.00	식			
				심야 전기보일러		1.00	식(일괄)			
				전기온수기		1.00	식			
				수도대	타일 (2.5×2)	1.00	식			
				화단	벽돌조	2.00	식(일괄)			
				화단	콘크리트조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40.00	m^2			
				차양	폴리카보네이트	1.00	식			
				담장	블록조	50.00	m(식)			
				계단	철재	1.00	식			
				차양	철주1ea, 흑색차양재	1.00	식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감나무	30년	1.00	주(일괄)			
				수국	15년	1.00	주			
				철쭉나무	15년	10.00	주			
				약나무	15년	1.00	주			
8	청도읍	고수리	911-5	주택및 다용도실(보수비포함)	블록조 및 판넬조 함석지붕 (8×4.8-2.2×2)	34.00	㎡(일괄)	장**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창고	블록조 함석지붕 ((3+2)×4.8/2)	12.00	㎡			
9	청도읍	고수리	904-8	담장	블록조	12.00	m(식)	정**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 *동***호(범어동, 우방범어타운)	
				뽕나무	20년	1.00	주			
10	청도읍	고수리	904-12	주택	벽돌조 슬라브지붕 (9.8×11.8-4.3×1.2-7×1.4)	100.68	㎡	장**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계단하부 보일러실	계단포함 (4.3×1.2)	1.00	식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10	청도읍	고수리	904-12	주택 및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3.8×4.5)	17.10	m^2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9×3)	27.00	m^2			
				창고	목조 스레트지붕 (3×2.5)	7.50	m^2			
				보일러실 (옥상)	판넬조 판넬지붕 (3×2.5)	7.50	m^2			
				대문	철재(철주포함)	1.00	식			
				대문(후문)	SUS	1.00	식			
				입구계단	화강석 (4×1.5)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60.00	m^2			
				담장	블록조	10.00	m(식)			
				심야 전기보일러	옥상소재	1.00	식(일괄)			
				태양열온수기	옥상소재	1.00	식			
				빨래건조대	철재	1.00	식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10	청도읍	고수리	904-12	감나무	35년	1.00	주(일괄)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감나무	20년	1.00	주			
				감나무	10년	1.00	주			
				포도나무	10년 (파고라포함)	2.00	주			
				으아리꽃나무		1.00	군			
11	청도읍	고수리	904-15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3×2)	6.00	m^2	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구길 ***-**	
				화장실	블록조 스레트지붕 (2×1.5)	3.00	m^2(식)			
				담장	블록조	5.00	m(식)			
12	청도읍	고수리	902-10	주택	블록조 스레트지붕 (2.7×4.4+9×6)	65.88	m^2	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가닥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2.7×4.6)	12.42	m^2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12	청도읍	고수리	902-10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4×2)	8.00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화장실	블록조 함석지붕 (2×2)	4.00	㎡(식)			
				대문	철재(문주포함)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20.00	㎡			
				화단	블록조	1.00	식			
				수도대	콘크리트 (2×1.2)	1.00	식			
				장독대	콘크리트 (2×1.2)	1.00	식			
13				주택	블록조 함석지붕 (9.8×4.7)	46.06	㎡	박**	경남 밀양시 교동 ***-**	
				가닥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6.5×2)	13.00	㎡			
				창고 및 화장실	블록조 스레트지붕 (3.6×3.2)	11.52	㎡(식)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13				보일러실	블록조 스레트지붕 (2×2)	4.00	㎡		경남 밀양시 교동 ****_**	
				돈사	블록조 (3×2)	6.00	㎡(식)			
				대문	철재(문주포함)	1.00	식			
				장독대	콘크리트 (3×2.5)	1.00	식			
				수도대	콘크리트 (2×2)	1.00	식			
				봉당	콘크리트 (5×2,h:0.4m)	1.00	식			
				봉당	콘크리트 (5×1,h:0.15m)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44.00	㎡			
				빨래건조대	철재	1.00	식			
				주택	목조 스레트지붕 (9.1×4.3)	39.13	㎡	정**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14	청도읍	고수리	902-8 902-9	창고	목조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7×3)	21.00	㎡		대구 동구 효신로*길 **-* (효목동)	
				주택	블록조 슬라브지붕 (3.6×2.8)	10.08	㎡			
				화장실	블록조 슬라브지붕 (2.5×2.5)	6.25	㎡(식)			
				대문	철재(문주포함)	1.00	식			
				담장	블록조	10.00	m(식)			
				감나무	35년	1.00	주(일괄)			
				뽕나무	35년	1.00	주			
15	청도읍	고수리	901-1 900-1	감나무	30년	6.00	주(일괄)	박**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감나무	25년	1.00	주			
				뽕나무	35년	2.00	주			
				매실나무	20년	9.00	주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매실나무	15년	1.00	주			
				가죽나무	10년	1.00	주			
				은행나무	20년	1.00	주			
16	청도읍	고수리	894-6	주택	목조 함석지붕 (8.2×3)	24.60	m^2	정**	대구 수성구 매호동 **** 유성시지랑스빌***-** **	
				주택 및 창고	목조 함석지붕 (8×3.5)	28.00	m^2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2.5×2.4)	6.00	m^2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 (3×1.5)	4.50	m^2			
				가닥	목조 함석지붕 (8.2×2)	16.40	m^2			
				가닥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4×1.5)	6.00	m^2			
				대문	철재(철주포함)	1.00	식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16	청도읍	고수리	894-6	담장	토담	10.00	m(식)	대구 수성구 매호동 **** 유성시지랑스빌***-****		
				바닥포장	콘크리트	40.00	m^2			
				장독대	콘크리트 (3×2)	1.00	식			
				화단	블록조 (1.5×1.5)	2.00	식(일괄)			
				감나무	35년	3.00	주(일괄)			
				석류나무	35년	1.00	주			
17	청도읍	고수리	893-1 893-2	주택(철재계 단포함)	블록조 슬라브 및 강판기와지붕 (6.3×9.2+4.3×1.1)	62.69	m^2	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주택	블록조 강판기와지붕 (8.6×4)	34.40	m^2			
				보일러실	블록조 스레트지붕 (3×1.5)	4.50	m^2			
				화장실	블록조 슬라브지붕 (3×1.5)	4.50	m^2(식)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17	청도읍	고수리	893-1 893-2	가닥	철파이프조 강판기와지붕 (6×1.5)	9.00	m^2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가닥	철파이프조 강판기와지붕 (5×1.5)	7.50	m^2			
				대문	목재(문주 및 슬라브지붕포함)	1.00	식			
				입구계단	목재 (3×2)	1.00	식			
				장독대	콘크리트 (2×1)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40.00	m^2			
				화단	블록조 (8×1.5)	1.00	식			
				화단	블록조 (3×1)	1.00	식			
				봉당	콘크리트 (6×1)	1.00	식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17	청도읍	고수리	893-1 893-2	감나무	35년	1.00	주(일괄)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감나무	30년	1.00	주			
				석류나무	30년	1.00	주			
				꽃나무	20년	2.00	주			
				철쭉나무	20년	4.00	주			
				장미나무	20년	2.00	주			
18	청도읍	고수리	894-6	창고	블록조 슬라브지붕 (2.7×1.8)	4.86	㎡	조**	경북 청도군 청도읍 뒷마*길 *	
				대문	SUS(문주 및 슬라브지붕포함)	1.00	식			
19	청도읍	고수리	894-4	주택	블록조 강판기와지붕 (10×6)	60.00	㎡	박**	대구 달서구 비슬로***길 **, ***동****호(대곡동, 대곡역금강*단지)	
				화장실	블록조 함석지붕 (1.5×1.5)	2.25	㎡(식)			
				가닥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10×2)	20.00	㎡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19	청도읍	고수리	894-4	대문	철재(철주포함)	1.00	식		대구 달서구 비슬로***길 **, ***동****호(대곡동, 대곡역금강*단지)	
				담장	블록조	6.00	m(식)			
				봉당	콘크리트 (10×1)	1.0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5.00	㎡			
20	청도읍	고수리	889-10	보일러실	블록조 함석지붕 (2×2)	4.00	㎡	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물탱크	철구조물포함	1.00	식			
				담장	블록조	6.00	m(식)			
				보일러		1.00	식			
21	청도읍	고수리	889-8	감나무	35년	4.00	주(일괄)	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정읍 석정로 ***-**(우방 신천지타운), ***동 ****호	
				감나무	25년	2.00	주			
				감나무	20년	5.00	주			
				감나무	15년	4.00	주			
				복숭아나무	15년	3.00	주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21	청도읍	고수리	889-8	복숭아나무	7년	1.00	주		경상북도 칠곡군 석정읍 석정로 ***-**(우방 신천지타운), ***동 ****호	
				가죽나무	15년	7.00	주			
				가죽나무	10년	3.00	주			
				가죽나무	5~6년	1.00	군			
22	청도읍	고수리	888-11	감나무	30년	2.00	주(일괄)	박**	부산 사상구 사상로 ***, 덕포동 주식회사 당산종합철강	
				밤나무	50년	1.00	주			
23	청도읍	고수리	1029-9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5×3)	15.00	㎡	정**	대구 북구 학정동로**, ***동 ***호 (학정동,칠곡*차한라하우젠트)	
				담장	블록조	15.00	m(식)			
				장독대	콘크리트 (3×3)	1.00	식			
				화단	블록조 (6×3)	1.00	식			
				감나무	30년	3.00	주(일괄)			
				꽃나무	15년	1.00	주			

구분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 소	
				석류나무	15년	1.00	주			
				오가피나무	20년	1.00	주			
24	청도읍	고수리	1029-9	창고	목조 스레트지붕 (5×3)	15.00	㎡	박**	경남 진주시 옥봉동 ***	
				문주	콘크리트	1.00	식			
				담장	블록조	10.00	m(식)			
				감나무	25년	1.00	주			
25	청도읍	고수리	1029-12	담장(보수비 포함)	옹벽 위 메쉬휀스	5(식)	m	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	
				바닥포장	쇄석	40.00	㎡			
				감나무	35년	1(일괄)	주			
				장미나무	15년	1.00	주			
26	청도읍	고수리	892-18	창고 및 화장실	목조 스레트지붕 (4.5×3)	13.5	㎡		국(재무부)	
				담장	블록조	8	m			
				감나무	25년	1	주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